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제 형벌 합리화 계획에 따른 경제 형벌규정 개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68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법안별 검토	7
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광해방지의 무자, 광해방지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함.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함.

마.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안 제5조)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및 양도·합병의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전기안전관리법」의 개정(안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경제 형벌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22.7.)하여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정부는 TF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¹⁾, 그 일환으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일괄개정안에는 6개의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고, ② 기수·미수 등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③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한 후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1) '22년 8월에 14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1차로 마련하여 '23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23년 3월에는 41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2차로 마련하고 이를 같은 해 5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3년 10월에 22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3차로 마련하였음.

[경제 형벌규정 개선 대상 법률 및 주요 내용]

법률	유형	개정 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과태료 전환	(대상) 광해방지사업 보고·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과태료 전환	(대상) 전기공사업의 양도 등 신고 의무 위반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전환	(대상)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형량 조정 (미수범)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수출입 미수범 (현행)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개정) 기수범보다 감경 또는 면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량 조정 (예비범)	(대상) 자유무역지역내 밀수입 예비범 (현행)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 (개정) 본죄 형량의 1/2 감경 처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先 행정제재 後 형벌 부과	(대상) 권한 없는 공유시설 점용 (현행) 1,5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先 시정명령 後 1,5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과 같이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경우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제 형벌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제재 효과는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해당 법규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²⁾,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시 구체적인 형량 결정과 관련해서는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운영상 장애의 심각성, 과태료 부과에 따라 사업자 등이 지게 되는 사회적 책임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대법원 1969. 7. 29. 69마400 결정[과태료 결정에 대한 재항고]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다같이 행정법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다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는데 있어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할 것이냐의 여부의 점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데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안별 검토

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전환

개정안은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설치자(이하 “광해방지의무자 등”이라 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고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호 삭제 및 제49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7조(벌칙) ----- ----- -----.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49조(과태료) ① ----- ----- 자 에게는 -----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u>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 -----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고 및 검사 관련 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u>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u>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u>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u>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해방지의무자 등이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임.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형량 조정(미수범)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미수범) 제40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u>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u>	제40조의2(미수범) ----- ----- <u>처벌한다.</u>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등을 수출입한 자에 대해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할 경우 시정명령(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중지 등) 또는 과징금(3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자는 제40조제1항제1호의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경우 징역과 벌

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 제40조의2에 따라 미수에 그친 자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관련 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u>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u> 나. <u>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u> 다. <u>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u>
제10조(시정조치)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1조(과징금)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u>3억원 이하의 과징금</u>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u>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u>
제40조의2(미수범) <u>제40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u>은 해당하는 <u>본죄에 준하여 처벌</u>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형법」³⁾ 규정에 의한 감경이나 면제가 배제되어 처벌이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의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차등화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⁴⁾.

3) 미수범의 형은 「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수의 법정형에서 임의적 감경(형법 제25조)을 하되,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형법 제26조)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형법 제27조)을 하게 됨.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7., p. 650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미수범에 대해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처벌한다”로 개정하였는데 (2022.6.10.)⁵⁾,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벌체계 상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5) [대외무역법 상 미수범 규정 개정 연혁]

대외무역법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대외무역법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의2·제2호·제4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先 행정제재-後 형벌 부과

개정안은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⁶⁾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3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8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신 설>	3의2. 제28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제28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u>을 명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u> <u>하지 아니한 자</u> 4.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8조의7제1항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①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②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③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④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53조제3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8조의8은 제28조의7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7)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의무 관련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먼저 시

행한 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시행한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 제28조의7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①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철거·파손·훼손(제1호), 적재하중(積載荷重) 초과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 설치(제2호)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② 법에서 정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 또는 양도·임대(제3호) 등 지식산업센터의 목적 외 사용과 같이 위반의 경중이 상당한 정도임에 반해,

제4호의 권한 없는 공유시설 점용은 위반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제4호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하게 되면, 의무 위반의 양

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교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음.

[先 시정명령 後 형벌부과 입법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량 조정(예비범)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금지물품 반출·입(법 제56조), 밀수입(법 제57조), 부정수출(법 제59조) 등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는 본죄 형량의 1/2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교사범 등) ① (생 략) ②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u><신 설></u>	제62조(교사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미수범</u> ----- -----. ③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현행법 제62조는 금지물품 반출·입(법 제56조), 밀수입(법 제57조), 부정수출(법 제59조) 등의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상 예비범 처벌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교사범 등) ②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6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관세법의 특성상 예비⁸⁾, 미수⁹⁾, 기수의 시점을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워 범죄 예방적 효과 차원에서 규정되어 왔으나, 예비범은 준비행위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형벌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지물품 반출·입, 밀수입, 부정수출 등 위반행위의 예비범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기수범보다 감경 처벌함으로써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개별 조문에서 「관세법」 상 절차, 벌칙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¹⁰⁾, 「관세법」은 유사 행위(밀수출입죄)의 예비범에 대해서 본죄 형량의 1/2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8) 예비는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나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를 말함.

9)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11) 관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관세법 상 예비범 처벌 관련 규정]

관세법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또한 헌법재판소는 예비행위는 실행의 착수도 되지 않은 준비단계로 법익침해 가능성과 위험성도 기수 행위와 달라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불법성과 책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관세법」 예비범을 실

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¹²⁾).

따라서 유사한 의무 위반(밀수출입 등)에 대해 감경 규정을 두고 있는 「관세법」과의 형벌체계 상 균형 확보,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비례 원칙 위배라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입주기업 부담완화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2019. 2. 28. 2016헌가13]

【관시사항】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비행위의 위험성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름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위험성이 미약한 예비행위까지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이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관세법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전환

개정안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및 양도·합병의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이하 “양도 등 신고”라 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호 삭제 및 제4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2. (생 략)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1. (생 략)	제43조(벌칙) ----- -----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11.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①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거나 공사업자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②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③ 공사업자가 양도·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공사업 양도·합병·상속 신고 의무 관련 규정]

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1. <u>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u> 2. <u>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u>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u>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u>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u>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u>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업의 양도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의무위반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양도 등 신고 의무는 공사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전기공사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보다는 간접적으로 행정 운영에 장애를 주는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의 형태로 제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특히, 양도 등 신고를 단순히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는 여전히 현행법 제41조의 2¹³⁾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13)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공사업 관리기능은 유지하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법적제재를 완화하여 민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전환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전기사업자 등”이라 함)가 전기설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삭제,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양벌규정) ----- ----- ----- ----- 제49조 ----- ----- ----- ----- ----- ----- ----- -----.

현행	개정안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생략) 2. ~ 10. (생략) ②·③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 ----- -----. 1.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설비 정기검사 의무 관련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① <u>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u>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0조(벌칙) <u>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례가 없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를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의무위반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형벌은 형량이 낮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입건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이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전기설비의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벌금 기준)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과태료 금액의 상향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457